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지침

제정 2017. 3. 1.
개정 2024. 1. 1.
개정 2024. 4. 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과 능률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평가준거와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7조에 의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“연구개발능률성과급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간접비 재원으로 연구자 및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정의한다.

제3조(평가 및 지급대상) ① 이 지침에 의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지급대상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간접비수익을 창출한 모든 을지대학교 교원으로 한다.

제4조(평가준거) ① 평가는 을지대학교 교수업적평가의 연구영역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평가항목은 교외연구 간접비 및 SCI급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, 평가비율은 7:3으로 한다. 산출된 대상자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등급별 평가준거를 적용한다. (개정 2024.1.1.)

평가등급	A	B	C	D	E
적용범주	상위 20% (개정 2024.4.1.)	21~40% (개정 2024.4.1.)	41~60% (개정 2024.4.1.)	61~80% (신설 2024.4.1.)	하위 20% (신설 2024.4.1.)

② 교외연구 간접비에서 직접성 경비가 집행될 경우 이를 제외한 부분만을 간접비로 인정한다. (신설 2024.1.1.)

제5조(지급기준)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대상자별 평가등급은 A, B, C, D, E로 한다. (개정 2024.4.1.)

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의 계상한도는 연간 간접비수익금 전체 총액의 10% 이내로 하며, 대상자별 지급액은 수행과제 유형별로 달리 적용한 대상자별 간접비수익금 총액 대비 아래의 평가등급별 산정비율 상당금액으로 정한다.

과제유형	평가등급별	A	B	C	D	E
연구개발 사업과제 (개정 2024.4.1.)	능률성과급 지급액 산정비율	10%	9%	8%	7% (신설 2024.4.1.)	6% (신설 2024.4.1.)

가. 2년이하 신임교원의 경우, 연구 장려 차원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10%로 일괄 산정한다.

나.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, 지급 받은 성과급도 반납함을 원칙으

로 한다.

다. 대응자금 수혜과제는 납부된 간접비 중 대응자금을 제외한 잔여 간접비로 한다.

③ 평가는 해당연도 1.1~12.31 기간 내의 연구성과(간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입금일 기준)를 평가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기는 연구성과 평가 이후에 연 1회 일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